



대법원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구현

보도자료		2026. 6. 18.
담당부서	사법지원실	공보관실
담당자	특별지원심의관 이민령	02-3480-1451

법원행정처, 유아·아동인도 집행사건 관련 전문가 간담회 개최

아동의 복리를 고려한 아동인도 집행절차에 대하여 활발히 논의 ... 기사소송법 개정 필요성 공감

■ 유아·아동인도 집행 관련 전문가 간담회 실시

- 법원행정처는 2026년 6월 17일 대법원에서 국내 유아인도 사건과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(이하 ‘헤이그아동탈취법’)에 따른 아동 반환청구 사건의 집행 과정에서 집행보조자로 활동하고 있는 유아 및 아동 관련 전문가를 초청하여 제1차 간담회를 개최하였음
- 이번 간담회는 「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른 아동반환청구 사건의 집행에 관한 예규(재특 2024-1)」, 「유아인도를 명하는 재판의 집행에 관한 예규(재특 82-1)」 및 「유아 관련 전문가 및 아동 관련 전문가의 위촉 등에 관한 내규」에 따라 2026년 위촉된 유아 및 아동 관련 전문가를 초청하여 국내 유아인도 사건과 헤이그 아동탈취법에 따른 아동반환청구 사건에 대한 이해를 돕고, 집행보조자의 역할 등을 안내함으로써 집행 실무 단계에서 유아 및 아동 인도의 집행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마련되었음

■ 전문가 간담회의 핵심 내용

- 제1주제는 “유아 및 아동 인도 집행절차”로, 이민령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특별지원심의관(사법연수원 42기)이 관련 예규 제·개정 경과와 아동인도 집행 절차를 개관하였음
- 제2주제는 “유아인도 집행에서 유아 및 아동 관련 전문가의 제도적 역할”로, 사법정책연구원의 심병준 연구담당관이 유아인도 집행의 특수성, 유아



대법원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구현

보도자료		2026. 6. 18.
담당부서	사법지원실	공보관실 02-3480-1451
담당자	특별지원심의관 이민령	

및 아동 관련 전문가 역할의 제도화 및 강제력 사용 기준의 명문화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하였음

- 제3주제로 유아 및 아동 관련 전문가가 집행보조자로 참여한 구체적인 사례를 발표하고, 향후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였음
- 이어 참석자들은 유아·아동인도 집행 현장에서 겪은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고, 집행절차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였음

■ 향후 추진 계획

- 현행 예규나 지침만으로는 유아·아동인도 집행절차의 개선을 도모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, 집행 과정에서 미성년 자녀가 겪을 수 있는 심리적 충격과 갈등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집행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근거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되었음
- 그 일환으로 가정법원이 유아·아동인도의 집행을 담당하도록 하고 집행시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한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(제11325호, 국회 계류 중)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지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음
- 법원행정처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집행 현장의 경험과 전문가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, 유아·아동인도 집행 절차가 아동의 복리를 최우선 가치로 구현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한층 강화할 것임을 밝힘



대법원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구현

보도자료		2026. 6. 18.
담당부서	사법지원실	공보관실 02-3480-1451
담당자	특별지원심의관 이민령	

2026년

유아·아동인도 집행사건에서의 유아 및 아동 관련 전문가 간담회

일시

2026. 6. 17.(수) 14:00-16:10

장소

대법원 409호 회의실



법원행정처